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April 1st,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BEPS 보고서 관련 주요 변경사항 - 국제거래 명세서 등 제출시기 일원화

BEPS 보고서 작성대상 기업의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요약손익계산서를 결산종료 후 12 개월 내 BEPS 보고서에 부표로 별첨하여 제출하였으나 2024.01.01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부터는 사업연도 종료 후 6 개월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 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단, 개별·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 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별도 제출 ✓ (좌 동) <삭 제>

<p>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은 제외</p> <p>* 대규모법인은 해당 자료를 개별 기업보고서의 부표 형태로 제출</p> <p>✓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p>	<p>*개별기업보고서 부표형태로 제출</p> <p>→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제출</p> <p>✓ (좌 동)</p>
--	--

호주 : Public CbCR 도입

2024년 2월 12일 호주 정부는 2024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이하 'Public CbCR') 지침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의견 요청에 따라 KPMG 세무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정과의 정합성 제고, 규정 준수 비용 절감, 조세투명성 보고의 글로벌 표준 조성을 위한 8 가지 권고사항을 재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무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규정은 EU 조세비협조국(EU non-cooperative) 및 제도개선국가(grey list)를 구분하여 정보를 작성하는 한편 나머지 국가의 정보는 합산하여 공개하는 등 EU Public CbCR 지침 반영
- 다국적 기업이 OECD CbCR 또는 GRI-207 기준에 맞춰 추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규정 준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조세투명성 증진
-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우 보고서 등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및 실무적 고려사항에 대한 추가 연구 진행

폴란드 :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법안

다국적 그룹 구성원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법안이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의 입법 정책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폴란드 각료회의는 EU 최저한세지침(EU Minimum Tax Directive)^(*)을 시행하는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은 빠르면 2024년 3 분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목표는 OECD 국제세원잠식 방지 모델 규정(Global Anti-Base Erosion, GloBE)을 EU Secondary Law 로 전환하는 것, 즉 글로벌최저한세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에 따라 대규모 다국적 기업은 매년 실효세율이 15%를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정 관할권에서 그룹에 속한 법인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해당 그룹은 추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Council Directive (EU) 2022/2523 of 2022.12.14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2 중 6742 (2023.12.27)

제목: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2019년 9월 한국법인인 AAA(이하 "AAA")와 특허권 양도계약(이하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0월부터 양도대가를(이하 "쟁점금액") 수취함
- AAA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에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납부함
- 2021년 11월 청구법인은 'AAA가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년 6월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개정 내용·취지·적용례'에 따라 이를 거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쟁점

- ① 특허권 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 쟁점금액은 비과세·면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됨.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b)와 관련 기술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 of the U.S. Korea Tax Convention)에 따르면 양도대가 중 조건부(Contingent)로서 특허권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사용료이고 그 외 나머지 금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양도계약에 따라 AAA에게 특허 관련 권리·명칭 등을 이전하고 고정양도대가를 지급받으며 실제 사용량이나 생산성 등에 연	[쟁점금액은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의 정의에 부합함] - 한미조세조약상 제14조 제4항(b)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조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특허권 등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대가 중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조세심판원 또한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한 사례가 존재함. 추가로 법원은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 산정방법과 관계없이 그 대가가 '처분에 상응하는

<p>동하여 그 대가를 결정·조정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은 그 어떠한 조건(Contingent)과 관계없이 확정된 것임</p> <p>- 따라서, 쟁점금액은 조건부로 수수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b)에 따른 사용료 및 제16조 제1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면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됨</p>	<p>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p> <p>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a)는 특허·의장·신안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b)는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항공기 제외)의 매각·교환 및 기타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또한 사용료로 판단하고 있음</p>
<p>[실령 쟁점금액이 비과세 내지 면세되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양도대가이므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p> <p>-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과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에 따르면 국내에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특허법」에 의하면 국내에 특허가 설정·등록되는 경우에만 특허권이 발생하므로, 국내에 특허로서 설정·등록되지 않았다면 특허권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사용료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p> <p>- 대법원은 국내에서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련해서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고 동 기관 판례를 통해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알 수 있음</p> <p>- 이러한 입장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가 2008.12.26. 개정되어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고, 최근 판례에서는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실시한 바 있음</p>	<p>[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 또한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p> <p>한미조세조약은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기준으로 '사용지 주의'를 규정하지만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지국에 대한 국내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함</p> <p>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원천지 판단 시 「특허법」상 속지주의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른 조세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 유효 및 침해 등에 관련되어 「특허법」상 속지주의가 적용될 수 없음</p> <p>동 쟁점 또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이지 특허권의 성립·효력·침해·소멸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속지주의라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닌 개별 조약 및 계약국의 법률해석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다룬 뿐 사용지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서 지급된 쟁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p>

4) 판단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은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도 특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과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매각으로 취득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쟁점금액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고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정액 일시불로 수수하더라도 해당 금액 또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정액 일시불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닌 점,
-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소득의 원천지국을 판단하는 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03 관세

AEO 갱신심사 시 탈세 정황 발견되면 관세조사로 전환

[개요]

지난 2월 16일,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AEO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의 혼동 여지를 제거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일은 미정)

2. 내용

(1)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를 변경

기존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의 혼동 여지를 제거함.

[[참고] AEO 갱신심사와 관세조사 비교]

구분	AEO 갱신심사	관세조사(기업심사)
----	----------	------------

근거법령	관세법 제225의2조 제8항 - “납세자신청 (희망)”	관세법 제110의3조 제1항 - 대상선정 (통지)
제도성격	공인 유지등을 위한 업체의 자발적 요청	영업의 자유 등 납세의무자 권익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
오류조치	官 정보 제공 → 民 자율 이행 = 컨설팅	官 강제조사 → 民 강제 이행
심사결과	우수기업 공인, 혜택 제공	혜택 없음 (문제기업 징벌적 성격)

(2) 탈세 정황 발견 시, 갱신심사 → 관세조사 전환 근거 마련 (제34조 제7항 관세조사 전환 근거)

본부세관장은 갱신 심사 중 AEO 기업의 명백한 탈세 정황이 발견되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시행 중인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됨.

(3) 갱신심사 수행 주체 확대 (제5조 사무분장 등)

관세청은 갱신심사를 본부 세관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늘어난 심사 수요 증가에 따른 심사기간 장기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AEO 갱신심사 건수는 2018년도 97건에서 2023년도 131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며, 이에 관세청은 기존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지정된 갱신심사 주체를, 관세청장이 지정한 경우 본부세관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임.

(4) 업체 신청 철회에 따른 공인심사 중단 규정 마련 (제11조의2 공인심사 신청의 취하)

기존 세부 규정이 없던 공인심사 신청 취하 규정을 마련. 신청업체가 공인 신청을 취하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심사 중단 및 제출 서류를 반환하는 절차가 신설됨.

(5) AEO 공인 취소 사유 추가

보세사 명의 대여죄로 처벌받는 경우(즉, 보세사명의대여죄 확정 시) AEO 공인이 취소. 단, 관세사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은 관세사 부문 AEO 공인 취소 사유에서 제외됨.

구분	현재	개정(안)
공인 취소 사유 (제25조의 2 제1항)	공인취소 사유 발생 시 법령과 달리 무조건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u>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에만 필수적 공인 취소 사유로 명시</u>

	법 제268조의 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법 제275조의4 (보세사명의대여죄) (추가)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u>선고 또는 통고처분 (관세사법 제29조 제4항 제외)</u>

(6) AEO 공인업체의 검사축소율 상향

AEO 공인등급에 따른 검사축소율이 상향된 바, AAA 등급은 100%, AA 등급은 70%→80%, A 등급은 50%→70% 으로 상향됨. 다만, 해당 검사 축소율은 무작위 선별검사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KPMG 의견]

이번 AEO 고시 및 훈령 개정안은 AEO 인증기한 만료 시 재인증을 위해 착수하는 종합심사를 ‘갱신사’로 변경하는 등 용어정비와 함께, 갱신심사 소요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주체를 전국 본부세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AEO 혜택을 넓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AEO 갱신심사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발견될 경우, 관세조사로 전환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AEO 갱신심사 시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와 내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 갱신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를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문

T. 02-2112-0982



김상훈 전문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